

심 사 보 고 서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3
----------	-----

2020. 10. 23.(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0월 15일

-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개요

(단위:천원)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연구원	-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45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39,552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86,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다.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5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9,55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86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62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 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
- 각 기관별 관련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 출연계획안은 적절히 제출되었음.

구분	관련 근거	비고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다. 종합 검토의견

① 충북연구원

- 충북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함.
- 다만, 예금이자수입 감소, 이월금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예측 가능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히 출연금 증액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16	17.3	20.0	27.5	27.5	31.4	36.5	44.0	44.5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필요하나,
- 시·도별 재정력,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각 25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100	200	150	200	200	250	250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도별	정책연구과제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방안 연구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7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2016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 시·도별 재정력 지수(50%)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출연금액 산출>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A+B)	분담 비율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청북도	60	5.91%	0.525	2	30	19	2	30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공기업수(공사·공단, 시군상하수도)

<시·도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14	-	10.077	-	516	366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137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83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1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31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27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25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1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	0.416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	0.537	2	30	37	4	42
경상남도	72	72	-	0.72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60	60	60	60	60

4]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1년 (설립)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A)	958	52	52	81	85	80	102	118	121	129	138	
충북(B)	2,150	111	118	187	193	190	227	256	273	285	310	
전국(C) (17개사도)	83,210	4,094	4,635	6,587	7,712	7,199	9,066	9,580	12,102	10,843	11,392	
비율	A/C	1.15%	1.27%	1.12%	1.23%	1.10%	1.11%	1.13%	1.23%	1%	1.19%	1.21%
	B/C	2.60%	2.71%	2.55%	2.84%	2.50%	2.64%	2.50%	2.67%	2.26%	2.63%	2.72%

※ '11~'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13년부터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5]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각종 장학금 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 나눔, 미래지도자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000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694	657	650

<기금 현황 202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도 민 기탁금	이 자 (법인세포함)	기타 수입 (위탁포함)	계		
계	46,046	28,000	545	3,014	7,631	18,869	2,038	106,143	24,574	81,569
'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17	620	-	-	-	154	1,805	34	2,613	1,827	786
'18	694	-	-	-	287	1,954	726	3,661	2,126	1,535
'19	657	-	-	-	398	2,090	502	3,647	2,795	852
'20	650	-	-	-	193	1,315	213	2,371	1,403	968

<장학금 지원 실적 2020.9.30. 기준>

구 분	계	사업규모 (명)							계	소요액 (백만원)						
		'08~ '14	'15	'16	'17	'18	'19	'20		'08~ '14	'15	'16	'17	'18	'19	'20
계	11,671	6,752	1,096	1,099	1,094	1,131	1,189	687	15,839	9,607	1,417	1,426	1,341	1,413	1,511	718
성 적	8,616	5,016	800	800	800	800	800	400	10,988	6,803	930	930	930	930	930	465
수도권	585	180	90	90	90	90	90	45	1,170	360	180	180	180	180	180	90
도 내 대 학	339	160	40	40	40	59	62	-	678	320	80	80	80	118	124	-
로스쿨	167	105	21	21	-	10	20	9	817	557	105	105	-	25	50	23
특 기	777	498	74	73	74	58	75	-	786	531	65	66	68	56	69	-
희 망	398	249	20	30	36	41	44	16	373	234	19	29	30	40	40	16
코로나 희 망	-	-	-	-	-	-	-	200	-	-	-	-	-	-	-	100
곰두리	259	130	33	32	32	32	33	-	241	127	28	29	27	30	30	-
특 별 지 정	132	67	18	13	12	15	16	7	129	94	10	7	6	8	10	4
지 정	51	-	-	-	10	26	49	10	76	-	-	20	26	78	20	-
총 사 복 랑	195	195	-	-	-	-	-	-	110	110	-	-	-	-	-	-
연 구	40	40	-	-	-	-	-	-	366	366	-	-	-	-	-	-
꿈나무	95	95	-	-	-	-	-	-	86	86	-	-	-	-	-	-
복 지	11	11	-	-	-	-	-	-	15	15	-	-	-	-	-	-
HCN	6	6	-	-	-	-	-	-	4	4	-	-	-	-	-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

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543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45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 지원 필요	139,552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 인재양성 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인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86,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3.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5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9,552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86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62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붙임 1

1] 충북연구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충북연구원 운영	출자·출연금	4,450,000천원
출자·출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명 : (재)충북연구원 ○ 대 표 : 정초시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 력 : 정원 43명(현원 41명) -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충북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4,4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운영 4,050백만원('20년 대비 50백만원 증) -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400백만원('20년 동일)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이자수입 감소, 이월금 감소 등 수입 감소 예상 ○ 연구원의 안정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브레인으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기 연구원 청사 신축시 기금사용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 감소와 공무원 인건비 상승 수준(0.9%)의 인건비 상향 반영으로 '20년 대비 5천만원 상향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일택	전영미	민은경	220-2123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3-220-1108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출연기관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20.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5		41			54		
임원 (20.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			임기		
	이사장	○○○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북연구원장			재임기간		
	당연직감사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 선임직 이사 11명 및 선임직 감사 1명 임기만료('17. 9. 1.~'20. 8.31.)에 따른 재선임 진행중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기금) (단위:백만원)		2,159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6,385
	일반 회계	예산액	9,649	11,514	5,483		부채	1,154
		지자체 지원액	7,945	3,649	4,400		자본	15,231
2019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8			11,364		-786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250,000천원
출자·출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표 : 공석, 권한대행 부원장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 - 인 력 : 89명 -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발전 연구사업 지원 ○ 출연금액 : 250백만원('20년 동일) ※ 전국 17개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총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공동 출연 ○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지원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일택	전영미	민은경	220-2123

< 출연기관 현황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전화번호 : 033-769-9913		
						홈페이지 : www.krila.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 198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 - 2002,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출연기관		출연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19.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무기)		
	89		80			9		
임원 (19.9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공석	권한대행 부원장					
	당연직이사 (비상임)	20명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 개발원장, 자치분권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광역 사도(17) : 기획관리(조정)실장			당해직위 재임기간		
	임의직이사 (비상임)	7인	관련 학계 및 분야의 저명인사			2020.3.4.~2022.3.3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출연액 (단위:백만원)		6,754	
최근3년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62,834
	일반 회계	예산액	8,889	10,284	11,289		부채	8,411
		지자체 지원액	3,300	4,150	4,150		자본	54,423
	특별 회계	예산액	7,017	10,895	9,013			
		지자체 지원액	-	-				
2019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776			16,353			2,423	

관련법령 발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자·출연금	60,000천원
출자·출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대표 : 최치국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 인력 : 37명(이사장1, 상임이사1, 전문직 20, 행정지원직 15)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 출연금액 : 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감안 전국 시도별 배분 *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14백만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자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신성영	김홍순	김성준	220-224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20. 3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7명		37명		-		
임 원 (18.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최OO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04.20 ~ '23.04.19		
	상임이사	성OO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국장		'20.02.05 ~ '23.02.04		
	당연직이사 (비상임)	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1) : 지방경제지원관 - 광역 사도(5) : 기획관리(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직위 재임기간 - 광역시도 윤번제(2년임기) 		
	위촉직이사 (비상임)	허OO	인천연구원 부원장		'20.06.12 ~ '23.06.11		
		김OO	대한교통학회 회장		'20.06.12 ~ '23.06.11		
		제O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20.06.12 ~ '23.06.11		
		여OO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20.06.12 ~ '23.06.11		
감사(비상임)	박OO	성도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20.06.12 ~ '23.06.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9,329
		예산액	15,606	14,051		14,934	부채
	일반회계 지자체 지원액	1,008	1,008	1014		자본	17,798
2019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3,911			10,236		397	

참 고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2	0.5~0.7이하	30
3	0.7~0.9이하	36
4	0.9초과 ~	42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1~15	24
2	16~25	30
3	26~35	36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총복) : 0.525, 공기업 수(총복) : 19개(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14	-	10.077	-	516	366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137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83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1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31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27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25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1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	0.416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	0.537	2	30	37	4	42
경상남도	72	72	-	0.72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139,552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표 : 배진환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인력 : 73명(현원 63, 파견공무원 등 10)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금액 : 139,552천원(1,581천원 증)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임 				
출자·출연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도개선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최재훈	팀장 전도성	담당주무관 조열희	전화 220-2752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151조」 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0년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73명		63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0,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2, 사무직22, 시설직1)		10명 (위촉연구원1, 행정원1, 파견공무원8)		
임원 (2020년 8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허성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정원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이승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김항섭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송금현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 2.28. ~ 2021. 2.27.	
	이사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 2.28. ~ 2021. 2.27.	
	감사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용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 2. 28. ~ 2021.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4 (설립이후 '19년까지 출연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예산액	13,719	12,897	12,378		부채	84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5 중복인재양성재단

< 출연 계획 >

사업명	중복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출자·출연금	686,000천원
출자·출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중복인재양성재단 ○ 이사장 : 이시종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력 : 6명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내용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수도권장학금, 도내대학장학금 ○ 출연금액 : 68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 462,000천원(인건비 296,123천원, 경상비 165,877천원) - 수도권장학금 : 180,000천원(2,000천원 × 90명) - 도내대학장학금 : 44,000천원(2,000천원 × 20명)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재단 운영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시·군 출연금 중단('16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단운영비 부족분 계상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 나눔, 미래지도자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연 1,086여명, 1,400백만원) - 인재양성사업(대학인재 재능나눔 등 4개 사업. 연 520여명, 100백만원) ※ 장학기금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도 50억원, 시·군 3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16년부터 시·군 출연 중단 '20. 9. 15. 현재 적립액 : 814억 24백만원) ⇒ 이자율 하락과 시·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 재단 운영비 출연 불가피 		

주관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안창복	백준화	이경화	220-298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 043-224-0221 홈페이지: 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20. 9월 재단기금 814억 돌파(잔액기준)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9.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6명	0명				
입원 ('20.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당연직)	이OO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김OO	충청북도교육감	재임기간				
	〃	한OO	청주시장	재임기간				
	〃	조OO	충주시장	재임기간				
	〃	이OO	제천시장	재임기간				
	〃	정OO	보은군수	재임기간				
	〃	김OO	옥천군수	재임기간				
	〃	박OO	영동군수	재임기간				
	〃	홍OO	증평군수	재임기간				
	〃	송OO	진천군수	재임기간				
	〃	이OO	괴산군수	재임기간				
	〃	조OO	음성군수	재임기간				
	〃	류OO	단양군수	재임기간				
	〃	한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	김OO	충청북도 행정국장	재임기간				
	〃	맹OO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	박OO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재임기간				
	이사(선임직)	임OO	충북여약사회 회장	'20. 05. 14 ~ '22. 05. 13				
	〃	한OO	(주)테스트테크 대표이사	'20. 05. 14 ~ '22. 05. 13				
	〃	강OO	신한은행충북본부장	'20. 05. 14 ~ '22. 05. 13				
	〃	염OO	충북농협지역본부장	'20. 05. 14 ~ '22. 05. 13				
	〃	오OO	대신정기화물회장	'20. 04. 19 ~ '22. 04. 18				
	〃	박OO	前 충원고등학교 교장	'20. 04. 19 ~ '22. 04. 18				
	〃	이OO	충북대학교 교수	'20. 04. 03 ~ '22. 04. 02				
	〃	조OO	청주병원 원장	'19. 03. 08 ~ '21. 03. 07				
	〃	이OO	前 대성중학교 교장	'19. 03. 08 ~ '21. 03. 07				
	〃	류OO	대한변호사협회 충북협회장	'19. 04. 29 ~ '21. 04. 28				
	감사(당연직)	안OO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변OO	한빛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8. 09. 06 ~ '20. 09. 05				
주요기능	우수 인재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78,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81,246	
	일반 회계	예산액	6,651	7,341		7,753	부채	295
		지자체 지원액	694	657		650	자본	80,951
2019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380			2,146		1,234		

관련법령 발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